

방재관계법규

문 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풍수해’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- ② ‘수방기준’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.
- ③ ‘사전재해영향성검토’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‘우수유출저감시설’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.

문 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의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ㄱ. 녹조류 대발생 - 해양수산부 |
| ㄴ. 광역상수도 식용수 사고 - 국토교통부 |
| ㄷ. 저수지 사고 - 농림축산식품부 |
| ㄹ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- 국민안전처 |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ㄷ ④ ㄷ, ㄹ

문 3.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·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·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.
- ③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는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다.
-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·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, 강우량,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문 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중앙 행정기관과 해당 사무가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
|--|
| ㄱ. 국방부 -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|
| ㄴ. 해양수산부 -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(水難) 구호 등에 관한 사항 |
| ㄷ. 산업통상자원부 -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|
| ㄹ. 경찰청 - 이재민의 수용·구호, 긴급 재정 지원, 정보의 수집·분석·전파 등에 관한 사항 |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ㄷ ④ ㄷ, ㄹ

문 5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상 지진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 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·활용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·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,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문 6.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인증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·시설공사·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개선, 설비의 교체(改替) 및 신·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문 7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.
- 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적용되며,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진다.
- ④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문 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하며,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.
-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- ③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,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.

문 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전제로 한다)

- ① 여성가족부의 인명구조
-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의 인명구조
- ③ 교육부의 인명구조
- ④ 국민안전처의 응급처치

문 1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.
-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,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.
- ④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문 11.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.
- ③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, 이에 는 특허·인가·대리가 속한다.
- ④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,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.

문 12.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.
- ②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.
- ③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.
- ④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.

문 13. 「행정절차법」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.
- ②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.
- ③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.

문 14.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,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.
- ②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.
-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·변경·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.
-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.

문 15.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②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.
-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 하였던 하자를 말하고,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.

문 16. 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.
-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
- ③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.
-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문 17.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 이라고도 한다.
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
- ③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문 18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.
- ㄴ.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ㄷ.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.
- ㄹ.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ㄱ, ㄷ, ㄹ
- ④ ㄴ, ㄷ, ㄹ

문 19.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
- ②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
-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
- ④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

문 20.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.
-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,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.
- ③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.
- ④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,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.